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말레이시아, 유럽연합(EU) 식품에 대한 보이콧 고려

- 유럽연합(EU)이 열대우림 훼손 등을 이유로 바이오디젤 원료 팜오일을 2021년까지 퇴출하기로 결정한 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럽연합 식품에 대한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음
- 통상산업부는 바이오 연료 제조용 팜오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다른 팜오일 생산국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기반산업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식품 및 농산물 수입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말레이시아는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유럽연합(EU)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군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기본 식품이 아닌 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쌀이나 육류 등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보이콧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1위 생산국)와 함께 전 세계 팜오일 공급량의 약 90%를 생산하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농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4만4천900km²로 확장됐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천950만t(750억 링깃·약 20조5천억 원)의 팜 원유를 수출했음
- EU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670만t의 팜오일을 수입했고, 수입한 팜오일의 40%가량을 바이오연료 원료로 사용했음

* 출처 : 말레이시아 인사이트 2018년 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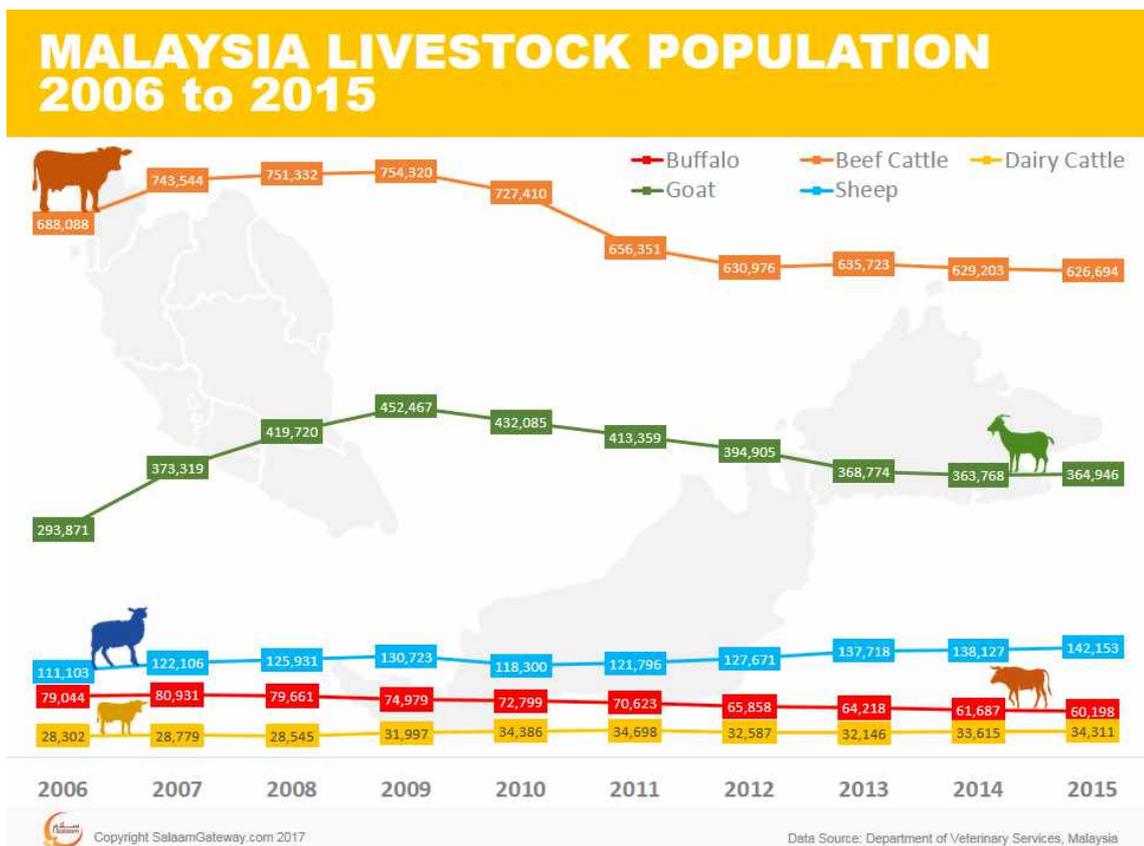
2. 말레이시아 소고기 자급률 50% 목표 크게 미달, 수입 의존 여전

- 말레이시아는 가금육과 달걀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소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의 경우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5년 말레이시아는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하에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소고기의 자급자족을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앞서 2011년에 ‘말레이시아농수산물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소고기 자급자족율을 32.7%로 정했던 것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임
- 목표 기간인 2020년까지 약 3년이 남아있던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의 소고기 자급자족 수준은 2020년까지 목표치인 50%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4년 약 27.8%, 2015년 24%로 그 비율이 하락했음
- 2016년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식 자료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ITC 무역지도 데이터를 참고하면, 말레이시아의 소고기 수입액은 2015년 552,011달러에서 2016년 492,418달러로 1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UN Comtrade를 기반으로 한 ITC 무역지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연간 약 50만 달러 상당의 신선, 냉장, 냉동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 소고기의 약 80%가 인도산 버팔로였음
- 소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과 이니셔티브는 2010년 시작된 국가경제변혁프로그램(EP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 하에 이루어졌음
- 육용우와 버팔로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소고기 자급률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국내 육용우와 버팔로의 개체수는 실제로 감소
- 농업기반산업부의 아흐마드 샤베리 칙 장관은 2017년 9월 한 현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를 키우는 것보다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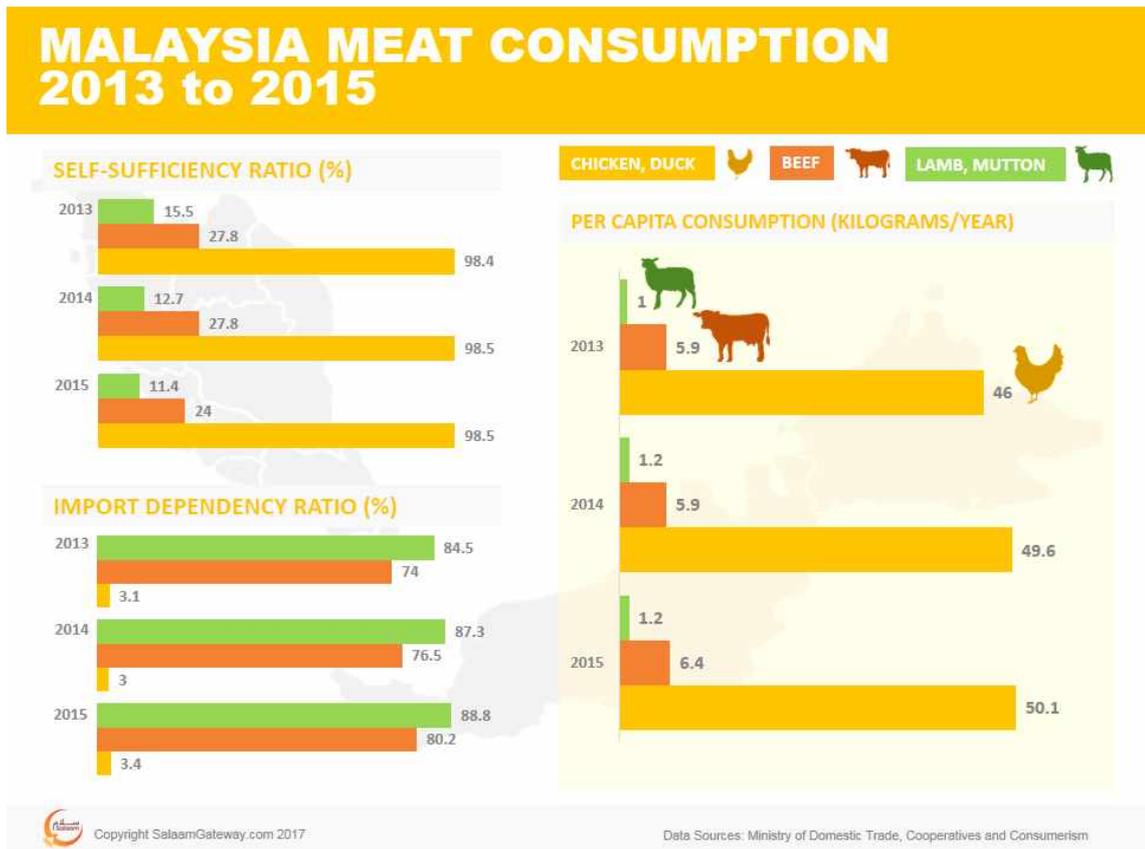
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 ‘농산물 및 식품정책연구소’와 방글라데시 ‘Jessor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육용우 생산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공급자의 수익성에 달려있으며,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 사료의 가용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함
- 이 연구에 따르면, ‘목초지 및 사료영역의 개발’ 그리고 ‘유전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말레이시아의 소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 결과를 통해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소고기 50% 자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품종 개량을 위한 가축의 수입, 육용우 사망률의 최소화, 번식력 확대, 그리고 사료 효율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임

<말레이시아 축산 개체수 2006년-2015년>



<말레이시아 육류 소비량 2013년-2015년>



* 출처: Global Islamic Economy Gateway 2017년 10월 9일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Free Zone 관련 업데이트
 - 말레이시아 관세청(RMCD)은 2016년 1월 5일에 시행된 Free Commercial Zone Guide를 대체할 Free Zone Guide를 발표. 수정된 Financial Act 2017에 따라, Free Zone("FZ")는 Free Commercial Zone("FCZ")과 Free Industrial Zone("FIZ")을 포괄하는 개념이 됨

- Free Zone에 대한 일반적인 물품서비스세(GST) 처리방법에 대한 요약

Event	GST 처리방법	참고자료
FZ**로의 상품 수입	어떠한 세금도 즉시지불 되지 않음	Section 162(a)
PCA 로 부터 FZ**로의 상품 공급	표준세율 처리	Free Zone Guide as at 1 January 2017
FZ** 내에서의 상품 공급	무시	Section 162(b) Previously relieved
FZ 로 부터 PCA 로의 상품의 운송	수입에 따른 GST 과세	Section 162A(1)
PCA 를 통한 FZ 로 부터 FZ/DA/BW 으로의 상품의 운송	유예	Section 162A(2)
FZ 로 부터의 상품 수출	0 %	Section 17(1)(b)

**특정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따라 처리이 달라질 수 있음.

- Free Zone Guide 내용 관련 주의사항

1. 수입지(Not FCZ)로부터 주요관세지역(PCA)로 운송된 수입품은 GST 대상이 됨. 그러나 만약 상품이 FCZ 로 운송된다면 GST 가 유예됨
2. FCZ 안에서 상품의 운송은 GST 처리 되지 않음.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은 0%의 GST 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Supply of goods within FCZ under Section 162(b) of GSTA 2014”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해당 시나리오는 FCZ의 기업이 해외기업에 상품을 판매 하거나, PCA 역내의 현지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포함. 상품은 필수적으로 역 내에서만 운송해왔음. 또한, 해외 기업 또는 PCA 기업은 GST 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추가문구와 함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요구조건은 GST 등록자임
3. FCZ로부터 PCA로 상품의 운송은 FCZ기업의 공급이 아니고 PCA로의 수입으로 취급되어야 함. 그러므로 FCZ기업은 GST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추가문구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요구되고 있음. 상기의

요구조건은 GST 등록한 경우에 한해, FCZ 기업으로 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다른 PCA 기업으로 판매한 해외 기업 또는 PCA 기업에 처리됨. 그러나 상품은 FCZ 기업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함

4. 수출을 위해 FCZ로 운송된 PCA의 상품은 GST 납부가 면제됨

* 출처 : 딜로이트 말레이시아